
 국토교통부	<h1>보도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21. 11. 29.(월) /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 부동산산업과	담당 자	·과장 한정희, 사무관 최용관, 주무관 박양숙 ·☎ (044) 201-3415, 3420	
보도일시	2021년 11월 30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. 29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이미 거래된 부동산 매물, 광고 플랫폼에서 사라진다.

- 30일부터 「표시·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」 등 행정예고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광고를 위해 「표시·광고 업무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안」 등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(‘21.11.30~12.20)한다고 밝혔다.
- 이번 개정은 ①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, ②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.

①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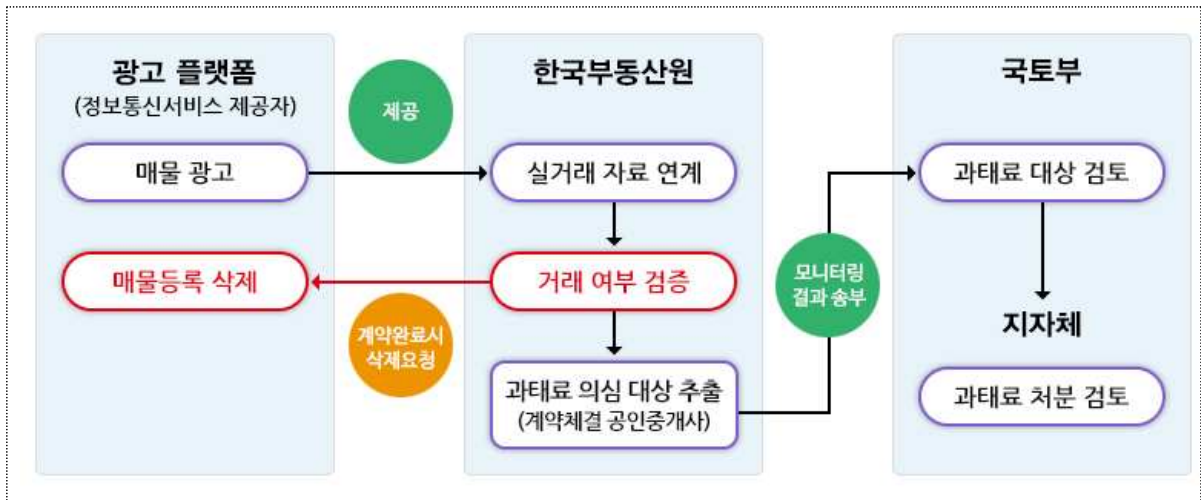
- ‘20년 8월 부동산 허위·과장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행 이후, 소비자 발길을 유도하기 위한 소위 “낙시성 매물” 등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.
-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, 부동산 광고 플랫폼(네이버 부동산)과 시스템을 연계하여,
- 거래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되는 허위매물에 대한 단속과 부동산 광고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□ 모니터링은 플랫폼 상에 노출된 광고와 실거래 정보를 비교하여 거래완료 여부를 확인하고,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삭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,

○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가 해당 물건에 대한 부동산 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(500만원 이하) 할 계획이다.

* 거래가 완료된 부동산 광고는 플랫폼 업체가 자진 삭제하되, 광고를 게재했으나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부과 예정

< 실거래기반 모니터링 절차 >



②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

□ 현행 「중개대상물의 표시·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」에서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명시방법을 ①단독주택 ②공동주택 ③근린생활시설 중상가건물로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어,

○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재지 명시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,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외 건축물에 대해 읍·면·동·리 및 층수를 명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□ 또한, 입주가능일을 ‘실제 입주일’ 또는 ‘즉시 입주’로만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정도 개선할 예정이다.

- **현행** 규정은 부동산 계약 이후 대출 등의 준비절차가 필요함에도 입주가능일을 특정하여 광고하도록 하는 등 실제 거래 현황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,
 -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규정과 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입주날짜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, 입주가능한 월의 초순·중순·하순으로 입주가능일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-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“이번 개정을 통해 허위 매물에 대한 차단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며 이와 함께 민간 플랫폼의 자율시정 역량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”한다면서,
- 아울러 “향후 모니터링 강화와 민간과 협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◆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 “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·행정예고”에서 볼 수 있으며,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, 팩스, 국토교통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* 의견제출처 : (주소) (우)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,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/ (전화번호) 044-201-3415, 3420 / (팩스) 044-201-5538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최용관 사무관(☎ 044-201-341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